

Deloitte Insights

AI-generated Image

September 2026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최종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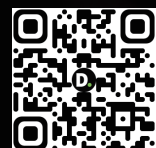
법정공시 전환과 기업의 주요 준비 과제

Deloitte Insights

Deloitte.

Download on the
App Store

GET IT ON
Google Play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에서
경영·산업 트렌드를 만나보세요!



목차

서문. 지속가능성 공시 최종안이 바꾼 기업의 준비 방향	03
01. 지속가능성 공시 최종안의 핵심 변화와 법정공시 전환	04
02. 제3자 인증과 면책체계: 공시정보의 신뢰성 확보와 책임 관리	07
03. Scope 3 유예와 공시 시점·선택공시 항목	10
결론. 법정공시에서 제3자 인증·Scope 3까지의 단계적 준비	13

서문.

지속가능성 공시 최종안 이후 기업의 준비 방향

정부가 2026년 7월 발표한 지속가능성 공시 최종안은 최초 의무공시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거래소 의무공시 단계를 거치지 않고 첫 공시부터 사업보고서 법정공시로 전환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최초 적용기업은 2027 회계연도(FY27) 정보를 대상으로 2028년 첫 공시를 준비해야 하는 만큼, 적용 대상과 공시 범위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보고서 일정에 맞춰 지속가능성 정보를 산출·검토하고 그 근거를 관리할 수 있는 준비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최종안 이후 기업의 우선 점검 과제

최종안의 주요 변화	기업의 우선 점검 과제
최초 의무공시 대상 30조 원 → 10조 원	적용시점 확인 및 FY27 데이터 준비 여부 점검
첫 공시부터 사업보고서 법정공시	지속가능성 정보의 산출·검토·승인·증빙 절차를 사업보고서 작성 일정과 연계
2030년 제3자 인증 의무화	공시정보의 출처·산정방법·근거와 증빙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기반 마련
초기 3년 책임 면제, 이후 세이프 하버	예측·추정정보에 적용한 가정과 주요 판단 근거 관리
Scope 3 공시 3년 유예 유지	주요 배출원과 데이터 확보 가능성, 직접·2차 데이터 활용 가능성 점검
온실가스 배출량도 3월 말 공시	배출량 산정·검증 일정을 사업보고서 작성 일정과 연계

출처: 금융위원회(2026.2.25; 2026.7.8), 딜로이트 분석

다만 주요 정책방향이 구체화된 것과 법적·세부 요건이 확정된 것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의무공시 대상 판단의 세부기준과 제3자 인증의 범위·수준, 세이프 하버의 구체적인 적용요건 등은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과 후속 제도화 과정에서 추가로 구체화될 예정이다.

01. 지속가능성 공시 최종안의 핵심 변화와 법정공시 전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7월 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최종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월 25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의견수렴안을 공개했으며, 이후 투자자·기업·경제단체·전문직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했다.¹²

최종안의 핵심 변화는 최초 의무공시 대상이 확대된 것뿐 아니라, 거래소 의무공시 단계를 거치지 않고 첫 공시부터 사업보고서 법정공시로 전환하는 방향이 제시됐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최초 적용기업은 FY27 정보부터 기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방식이 아니라 사업보고서 작성 일정에 맞춰 공시정보를 산출·검토·승인하고 관련 근거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의무공시 대상 확대와 연결공시 특례

2월 의견수렴안에서는 2028년(FY27) 연결자산총액 3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공시를 시작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나, 최종안에서는 최초 의무공시 대상이 연결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됐다. 2029년에는 5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28~2029년의 공시 상황을 평가한 뒤 2030년에는 2조 원까지 추가 확대할지를 검토한다.¹

최종안은 연결공시를 전제로 하며, 공시 첫해에 한해 자산과 매출이 모두 연결기준 10% 미만인 종속기업을 공시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해당 종속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가 공시대상기업의 재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중요 정보를 포함해 공시해야 한다.

한편 의무공시 대상 판단에 적용할 연결자산총액의 구체적인 기준 시점과 자산 기준을 새로 충족하거나 더 이상 충족하지 않게 된 기업의 적용 방식 등은 최종안에서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기업은 공시 적용시기뿐 아니라 향후 자본시장법 및 후속 법령에서 구체화될 대상 판단 기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림 1.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 2월 의견수렴안과 7월 최종안 비교

구분	2월 의견수렴안	7월 최종안
최초 공시 대상	2028년 연결자산총액 3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2028년 연결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대상 확대	2029년 10조 원 이상을 예시로 제시, 이후 추가 확대 논의	2029년 5조 원 이상, 2030년 2조 원까지 추가 확대 검토
공시 방식	거래소 의무공시 후 법정공시 전환	2028년부터 사업보고서 법정공시로 직접 시행 방향(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법적 책임	제도 초기 예측·추정정보에 세이프 하버 적용 방안	초기 3년 손해배상·행정제재·형사처벌 면제*, 이후 일정 정보에 세이프 하버 적용 계획
제3자 인증	초기 자율인증 후 단계적 의무화 검토	2030년부터 인증 의무화 방침
Scope 3	공시 대상별 3년 유예	공시 대상별 3년 유예 유지
온실가스 공시 시점	8월 중순까지 별도 공시 허용	3월 말 공시, 이후 수치 변경 시 정정공시

* 단, 고의적인 그린워싱은 손해배상·행정책임의 면책 대상에서 제외
자료: 금융위원회(2026.2.25; 2026.7.8), 딜로이트 재구성



첫 공시부터 사업보고서 법정공시 체계로 전환

2월 의견수렴안은 거래소 의무공시를 먼저 시행한 뒤 제도가 안착되면 자본시장법상 법정공시로 전환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반면 최종안은 최초 의무공시가 시작되는 2028년부터 지속가능성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변경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지속가능성 공시의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최종안 발표 이전부터 지속가능성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하는 복수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최종안 발표 이후에도 공시·인증 및 책임체계를 구체화하는 개정안이 추가로 발의됐다.³ 정책 방향은 최종안에서 구체화됐지만, 법적 의무와 세부요건은 국회 심사와 후속 법령 마련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SG 보고서 작성에서 법정공시 프로세스 준비로

사업보고서 법정공시로 직접 전환되는 방향은 기업의 준비 방식과 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최초 적용기업은 FY27 정보를 2028년 사업보고서에 공시해야 하는 만큼, 기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일정과 절차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공시정보의 산출·취합뿐 아니라 검토·승인 및 증빙관리 절차가 사업보고서 작성·검토 일정에 맞춰 실제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부서와 재무·공시 등 사업보고서 작성·검토에 관여하는 부서 간 역할과 책임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율공시 단계에서는 지속가능성 담당부서가 정보의 취합과 작성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사업보고서 법정공시에서는 공시책임자와 재무·공시 부서의 검토·승인 절차를 거치게 되고 데이터를 생성하는 현업부서의 역할도 함께 커지는 만큼, 부서별 책임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02. 제3자 인증과 면책체계: 공시정보의 신뢰성 확보와 책임 관리

지속가능성 공시가 사업보고서 법정공시로 직접 도입되는 방향이 제시되면서 공시정보의 신뢰성과 법적 책임을 둘러싼 제도도 함께 구체화되고 있다. 최종안은 2030년부터 제3자 인증을 의무화하는 한편, 의무공시 도입 초기 3년간 공시 정보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책임을 폭넓게 면제하고 이후에는 지속가능성 정보의 특성을 고려한 세이프 하버(Safe-Harbor)를 적용하는 방향을 제시했다.¹

기업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인증 의무화 시점과 실제 준비 시점을 구분하는 것이다. 제3자 인증은 2030년부터 의무화될 예정이지만, 세이프 하버와 향후 인증에 대응하려면 최초 법정공시 단계부터 공시정보의 출처와 산정방법, 주요 가정과 판단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초기 3년의 면책은 공시 오류의 허용범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장치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30년 제3자 인증: 의무화 시점은 제시됐지만 세부체계는 미정

최종안은 지속가능성 공시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3자 인증을 제도화하고, 공시 의무화 2년 후인 2030년부터 인증을 의무화하는 방침을 제시했다. 다만 인증 범위와 수준, 인증업자 진입규제 등 세부적인 제도 설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자본시장법령 개정 과정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국제적으로는 지속가능성 인증기준도 마련됐다.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는 2024년 「국제지속가능성인증기준 5000(ISSA 5000)」을 공표했으며, 이 기준은 제한적 확신(limited assurance)과 합리적 확신(reasonable assurance) 수준의 지속가능성 인증업무를 모두 포괄한다.⁴ 또한 ISSA 5000이 발효되면 온실가스 인증에 적용되어 온 ISAE 3410은 폐지되고, ISAE 3000(개정)은 지속가능성 외 주제의 인증업무에만 적용된다. 국내 인증 의무화 시점은 2030년이지만 국제 인증기준은 그보다 앞서 발효되는 만큼, 자발적 인증을 수행하는 기업은 의무화 이전 단계에서 국제기준에 따른 인증을 먼저 경험하게 된다.

공시정보에 대한 법적 책임: 초기 면책과 이후 세이프 하버

최종안은 제도의 안착과 기업의 적극적인 공시를 유도하기 위해 단계적인 책임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의무공시 도입 초기 3년간은 공시정보 전반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방향이다. 다만 고의적인 그린워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과 행정책임의 면책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¹

초기 3년 이후에는 지속가능성 정보의 특성을 고려한 세이프 하버를 적용할 계획이다. 대상은 미래 리스크 요인에 대한 예측정보, 온실가스 배출량 등과 관련한 추정정보, 협력업체 등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제3자로부터 수집한 정보 등이다. 최종안은 이러한 불확실성이 있는 정보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와 판단을 전제로 충실하게 공시한 경우 손해배상책임과 행정책임을 면제하고 형사책임도 배제하는 방향을 제시했다.¹

그림 2. 지속가능성 공시의 단계별 면책 방향

구분	면책 방향	주요 대상
도입 초기 3년	손해배상·행정제재·형사처벌 면제*	공시정보 전반
초기 3년 이후	일정 요건 충족 시 세이프 하버 적용	예측정보·추정정보·통제할 수 없는 제3자로부터 수집한 정보

* 단, 고의적인 그린워싱은 손해배상·행정책임의 면책 대상에서 제외
자료: 금융위원회(2026.7.8), 딜로이트 재구성

초기 3년의 면책은 공시 오류의 허용범위를 정한 것이 아니라, 제도 도입 초기 공시정보에 대한 법적 책임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장치이며 공시의무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면책기간 중 확정한 산정경계와 산정방법, 주요 가정은 이후 세이프 하버 적용 단계에서 합리적 근거를 설명하는 기준선이 되므로, 초기 3년은 준비 유예기간이 아니라 증빙체계를 정착시키는 기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측정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면책 규정은 현행 자본시장법에도 이미 존재한다.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2항은 사업보고서 등에 포함된 예측정보에 대해 예측정보라는 사실과 관련 가정·판단의 근거를 밝히고, 합리적인 근거나 가정에 기초해 성실하게 기재하며,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주의문구를 표시한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해당 기재 또는 표시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공시정보 사용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⁵

최종안의 세이프 하버 방향은 현행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2항의 예측정보 면책 구조를 참고하여, 그 적용대상을 추정정보와 기업이 통제하기 어려운 제3자 정보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 정보와 면책 요건은 향후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령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공시 결과보다 ‘근거와 판단 과정’을 관리

세이프 하버를 고려하면 기업은 최종 공시정보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가 어떤 근거와 판단을 거쳐 산출됐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최종안은 불확실성이 있는 정보를 공시할 때 합리적인 근거와 판단을 전제로 충실하게 공시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¹ 현행 자본시장법의 예측정보 면책 요건 역시 가정과 판단의 근거,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한 성실한 기재를 요구한다.⁵ 따라서 예측·추정정보를 작성할 때에는 적용한 가정과 산정방법, 주요 판단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제3자 인증에서는 공시정보를 뒷받침하는 근거와 증빙도 중요하다. ISSA 5000은 지속가능성 인증업무의 계획부터 위험평가와 대응, 인증증거 확보, 결론 및 보고까지 인증업무 전반을 다루고 있다.⁶ 국내 인증제도의 세부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향후 인증 대응을 고려하면 주요 정보의 출처와 산정방법, 가정 및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 최종안은 지속가능성 공시정보에 적용할 내부통제의 구체적인 수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사업보고서 법정공시와 향후 제3자 인증을 고려해 정보의 신뢰성과 추적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그림 3. 법적 책임·제3자 인증을 고려한 공시정보 점검사항

점검 영역	주요 확인사항
정보 출처	주요 공시정보가 어떤 데이터·자료를 바탕으로 작성·산출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가
산정 근거	주요 지표에 적용한 산정방법과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가
추정·판단 근거	예측·추정정보에 사용한 주요 가정과 판단의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가
외부 정보	외부에서 수집한 정보의 입수경로와 제공 주체, 공시에 활용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가
변경 이력	산정방법·가정·데이터가 변경된 경우 변경 내용과 사유를 추적할 수 있는가

자료: 금융위원회(2026.7.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IAASB, 딜로이트 재구성

제3자 인증은 2030년부터 의무화될 예정이지만, 이에 필요한 정보관리 기반은 최초 법정공시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마련할 필요가 있다.

03. Scope 3 유예와 공시 시점·선택공시 항목

최종안은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를 의무공시 대상별로 3년 유예하는 방안을 유지하는 한편, 온실가스 배출량의 공시 시점을 사업보고서와 동일한 3월 말로 일원화했다. 기업의 공시 준비에서는 연결공시 범위와 Scope 3 가치사슬 범위를 구분하고, 제도상 의무공시 항목과 선택공시 항목, 거래소 자율공시의 차이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¹

Scope 3 3년 유예 유지와 데이터 준비

Scope 3는 보고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최종안에서도 의무공시 대상별 3년 유예 방안이 유지됐다. 연결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기업은 2031년, 5조 원 이상 기업은 2032년부터 적용되며, 2조 원 이상 기업은 의무공시 확대 여부 자체가 아직 검토 대상이므로 2033년 Scope 3 적용일정도 잠정적이다. 또한 최종안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으로서 해외탄소규제 업종이 아닌 기업에 대한 Scope 3 공시 면제 방안도 의견수렴안과 동일하게 유지했다.¹

그림 4. 지속가능성 공시와 Scope 3 적용 일정

구분	최초 지속가능성 공시	Scope 3 공시
연결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2028년(FY27)	2031년
연결자산총액 5조 원 이상	2029년	2032년
연결자산총액 2조 원 이상	2030년 추가 확대 여부 검토	2033년(잠정)

* Scope 3 공시는 의무공시 대상별로 3년 유예. 연결자산총액 2조 원 이상 기업의 2030년 의무공시 확대 여부는 2028~2029년 공시 상황을 평가해 검토할 예정
자료: 금융위원회(2026.7.8), 딜로이트 재구성

Scope 3를 준비할 때에는 지속가능성 공시의 보고기업 범위와 Scope 3 가치사슬 범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KSSB 제1호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의 보고기업을 관련 재무제표의 보고기업과 동일하게 정하고 있어, 관련 재무제표가 연결재무제표인 경우 지속가능성 공시 역시 해당 연결실체를 기준으로 한다. 반면 Scope 3는 보고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상으로 한다.⁷ 따라서 지속가능성 정보를 어느 보고기업 범위에서 공시할 것인지와 Scope 3 산정을 위해 어느 가치사슬 배출량을 포함할 것인지는 서로 다른 판단이다.

그림 5. 연결공시 범위와 Scope 3 가치사슬 범위의 구분

구분	연결공시 범위	Scope 3 가치사슬 범위
판단 대상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하는 보고기업의 범위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의 범위
주요 범위	관련 재무제표의 보고기업 범위	기업의 가치사슬 전반
최종안의 적용 방식	공시 첫째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속기업 제외 가능*	의무공시 대상별 3년 유예

* 해당 중속기업의 자산과 매출이 모두 연결기준 10% 미만인 경우. 다만 공시대상기업의 재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 지속가능성 정보는 포함
출처: 금융위원회(2026.7.8), 한국회계기준원, 딜로이트 재구성

정부는 Scope 3 유예기간 동안 기업의 산정과 데이터 수집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주요 수출 15개 업종의 Scope 3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과 전과정목록데이터(Life Cycle Inventories, LCI) 1,000개를 2028년까지 구축하고, 협력업체가 입력한 데이터를 여러 공시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산업공급망 ESG 플랫폼 개발도 추진한다.¹ 향후 업종별 가이드라인과 공급망 데이터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Scope 3 산정·수집 여건도 보완될 예정이다.

기업은 유예기간 동안 주요 Scope 3 배출원과 현재 확보 가능한 데이터를 파악하고, 직접 수집이 가능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영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모든 협력사로부터 직접 데이터를 확보하는 방식만을 전제로 하기보다, 직접 수집이 어려운 영역에서는 향후 정부가 제공할 업종별 산정 가이드라인과 LCI 등 2차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도 3월 말로 일원화

온실가스 배출량의 공시 시점도 최종안에서 변경됐다. 의견수렴안은 지속가능성 정보를 원칙적으로 3월 말에 공시하되, 온실가스 배출량은 배출량 인증 일정을 고려해 8월 중순까지 별도로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² 반면 최종안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상 검증기관의 검증수치를 다른 지속가능성 정보와 함께 3월 말에 공시하고, 이후 수치가 변경되면 정정공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¹ 이에 따라 최초 적용기업은 FY27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검증 일정이 2028년 3월 사업보고서 작성 일정에 맞춰 운영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이후 수치 변경에 따른 정정공시 절차까지 포함해 온실가스 정보의 산정·검증 및 공시 일정을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때 온실가스·에너지·인력 등 비재무 운영정보와 기후 관련 재무영향·시나리오 분석 등 재무결산과 연계되는 정보는 확정 시점이 다르므로, 전자는 결산 초기에, 후자는 재무수치 확정 이후에 마감하는 방식으로 일정을 구분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의무공시와 선택공시, 거래소 자율공시의 구분

정부의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은 KSSB 공시기준을 바탕으로 기후 관련 공시부터 의무화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기후 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기회는 선택공시로 두고, 기후 관련 공시 가운데서도 톤당 내부탄소가격과 산업별 지표 등은 선택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⁸

선택공시는 공시기준상 선택공시 항목으로 정해진 사항에 대해 기업이 공시 여부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거래소 자율공시는 법정공시 의무대상이 아닌 상장기업 등이 지속가능성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것으로, 선택공시와 적용 차원이 다르다. 최종안은 법정공시 의무대상이 아니더라도 상장기업이 KSSB 등을 적용해 거래소를 통해 지속가능성 정보를 자율공시할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정비하고, 자율공시 기업에 공시우수법인 선정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¹

결론. 법정공시에서 제3자 인증·Scope 3까지의 단계적 준비

지속가능성 공시 대응은 최초 법정공시, 제3자 인증, Scope 3 공시를 각각 별개의 과제로 접근하기보다 기업별 적용시점을 기준으로 데이터와 공시 프로세스를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연결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최초 적용기업은 2027 회계연도(FY27) 정보를 대상으로 2028년 첫 법정공시를 준비해야 하는 만큼, 공시 대상과 데이터 출처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보의 산출·취합·검토·승인 및 증빙관리 절차가 사업보고서 일정에 맞춰 실제로 운영될 수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후 2030년 제3자 인증과 2031년 Scope 3 공시를 고려해 정보관리와 가치사슬 데이터 준비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후속 적용기업은 남은 준비기간과 현재 데이터·프로세스 수준을 고려해 공시 기준에서 요구하는 정보와 현재 준비 수준 간 차이를 먼저 파악하고, 적용시기에 맞춰 필요한 준비를 구체화할 수 있다. 특히 연결자산총액 2조 원 이상 기업은 2030년 의무공시 확대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후속 제도화 경과를 확인하면서 준비 범위와 시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업별 적용일정과 현재 준비 수준을 기준으로 최초 법정공시, 제3자 인증, Scope 3로 이어지는 준비 과제를 단계적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



그림 6. 딜로이트 KSSB 대응 로드맵

기초 설계부터 데이터·프로세스 구축,
시스템 고도화까지 단계별 준비



주석

1. 금융위원회,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최종안), 2026.7.8.
2. 금융위원회, 금융시장이 기업의 녹색 전환(GX)을 뒷받침하겠습니다, 2026.2.25.
3. 국회에는 지속가능성 공시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복수 발의되어 있다. 금융위원회 최종안은 박상혁 의원안(2026.3.30), 민병덕 의원안(2026.4.8), 이현승 의원안(2026.4.21), 김현정 의원안(2026.6.18) 등을 언급하고 있으며, 최종안 발표 이후에도 한정애 의원안(의안번호 2220426, 2026.8.4), 김주영 의원안(의안번호 2220469, 2026.8.5) 등이 발의됐다.
4. IAASB, International Standard on Sustainability Assurance 5000, General Requirements for Sustainability Assurance Engagements, 2024.11. 동 기준은 2026년 12월 15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인증업무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도 허용됨
5.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2항.
6. IAASB, ISSA 5000 Implementation Guide, 2025.1.
7. 한국회계기준원, KSSB 공시기준서 제1호 「일반 요구사항」 및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에서의 보고기업」, 2026.2.
8. 한국회계기준원, KSSB 공시기준서 제1호 「일반 요구사항」 및 제2호 「기후 관련 공시」

한국 딜로이트 그룹 전문가

ESG 통합서비스그룹

깊이 있는 산업별 전문 지식과 다년간의 ESG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보유한 전문 인력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에 걸쳐 기업의 실효성 높은 저탄소 전환 및 탄소중립 달성을 지원합니다. 또한, 딜로이트의 차별화된 글로벌 네트워크와 기술을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조남진 파트너

ESG 통합서비스그룹 리더

☎ 02 6676 3700
@ namcho@deloitte.com

Nicola Weir 파트너

CSRD & Global Corridor |
ESG 통합서비스 그룹

☎ 02 6676 3178
@ nweir@deloitte.com

김병삼 파트너

ESG 전략 및 공시, 탄소중립
기후 기술 | ESG 통합서비스그룹

☎ 02 6099 4277
@ byungsakim@deloitte.com

박태호 파트너

ESG 공시, 보고서 및 평가대응 |
ESG 통합서비스그룹

☎ 02 6676 2163
@ taehpark@deloitte.com

연경흠 파트너

ESG 전략 및 공시 |
ESG 통합서비스그룹

☎ 02 6676 1949
@ kyeon@deloitte.com

유준혁 파트너

ESG 전략 및 탄소배출 |
ESG 통합서비스그룹

☎ 02 6676 3096
@ junyoo@deloitte.com

허규만 파트너

ESG 공시 및 Assurance |
ESG 통합서비스그룹

☎ 02 6676 1454
@ kyhuh@deloitte.com



앱

Download on the
App StoreGET IT ON
Google Play

카카오톡 채널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과 카카오톡 채널에서
경영·산업 트렌드를 만나보세요!

Deloitte.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본 보고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저작권자”)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업적 활용 기타 영리목적 이용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이용시, 출처를 저작권자로 명시해야 하고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